폐기물 관리에 대한 IAATO 성명서

2017년 7월 업데이트

IAATO 회원국은 남극 조약 지역에 인접한 해양 지역의 폐기물 관리 관행에 대해 논의했으며 다음과 같이 합의했습니다.

1. IAATO 회원국이 운영하는 SOLAS 선박 및 IAATO 요트(해당하는 경우)의 경우, 남극 조약 환경보호에 관한 의정서 및 MARPOL 73/78(극지해역 운항선박 국제기준인 Polar Code[2]에 따른 최신 개정 사항 포함)에 따라 선박에서 바다로 방출하는 쓰레기에 대해 남극 조약 지역에서 적용되는 제한선이 북쪽으로 더 확장되어서 남극 수렴선[1](극전선) 이남의 모든 곳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2. 남극 수렴선의 위치는 일반적으로 남극 해양 생물자원 보존 협약(CCAMLR)[1] 1조 4항에 명시된 북쪽 한계를 정의하는 선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단, 해수 온도의 변동이 측정되어 위치가 더 북쪽으로 추가로 명확하게 설정되는 경우 예외입니다.
3. IAATO 회원국이 운영하는 남극 항해 선박에 의한 폐기물 방출을 완전히 방지하겠다는 장기적인 목표를 바탕으로, 모든 선박은 가능한 경우 모든 폐기물을 선내에 보관했다가 해안가에서 적절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4. IAATO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폐기물 수용 시설의 확장을 촉진하기 위해 관문 항구에서 해당 당국과 통신 라인을 개방합니다.

[1] 남극 수렴선은 위도와 경도 자오선의 평행선을 따라 다음 지점을 연결하는 선으로 간주합니다. 50°S, 0°; 50°S, 30°E; 45°S, 30°E; 45°S, 80°E; 55°S, 80°E; 55°S°, 150°E; 60°S, 150°E; 60°S, 50°W; 50°S, 50°W; 50°S, 0°.

[2] 부록 '극지 기준이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을 참조하십시오. 국제해사기구(IMO).